



제424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대부 알선 금지 명시 등〉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00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대부 알선 금지 명시 등	2
2. 대부중개업자등의 개인정보 타인 제공 금지 등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25.
3. 회 부 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의 알선,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잠재고객의 정보가 제공되거나 대부의 중개·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대부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 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대부 알선 금지 명시 등

□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대부 ‘알선’을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u>대부중개를</u>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⑦ (생략) <신설> 제19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u>대부중개를</u>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⑤ (생략)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 -----<u>대부를</u> <u>중개 또는 알선</u>하거나----- ----- -----.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생략) 제1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대부중개·알선</u>을----- ----- 7. ~ 9. (현행과 같음) 9의2.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중개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 현행법상 ‘대부중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중개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에서의 대출알선 행위는 대부중개가 아닌 광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였음.

□ 이에 2025년 1월 21일 개정된 「대부업법」¹⁾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되고, 대부중개업의 정의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음.

○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판례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대부업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대부중개’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판시한 바²⁾,

‘대부중개’라는 용어에는 직접적인 ‘중개’뿐만 아니라 비교적 간접

1) 법률 제20714호, 2025. 7. 22. 시행예정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적인 형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중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알선’의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시행예정법률에서는 ‘대부중개업’ 외에 ‘대부중개’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정안과 같이 대부중개업 관련 규제에 있어 ‘대부중개’와 ‘대부알선’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대부중개업’의 개념에서 ‘대부중개’의 의미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대법원 판례 역시 ‘대부중개’의 개념에 ‘알선’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대부알선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중개업의 정의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 없이 현행법 규정만으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어 개정내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2. 대부중개업자등의 개인정보 타인 제공 금지 등

-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³⁾(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부중개 및 알선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8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제19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⑤ (생략)	법률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u>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중개·알선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9. (생략) <u>9의2. 제1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u>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3)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의미함.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22일 시행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⁴⁾의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 용도 외 처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⁵⁾.

○ 그런데 시행예정법률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타인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은 ‘대부중개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대출모집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대출모집인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역시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또한 시행예정법률은 대부중개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대부중개’로 규정하면서 ‘대부알선’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알선 행위에 대한 규제 역시 명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출모집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5) 「대부업법」(2025. 7. 22. 시행예정)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먼저,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등이 대부중개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일절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이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대부업자 등에게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므로 대부중개업 영위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음.

○ 개인정보 처리가 제한되는 범위를 ‘용도 외 사용’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안 제11조의2제8항을 신설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시행예정법률 제9조의9를 개정하는 방식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이는 대부중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타인 제공을 용도 內 목적으로 한정하고 용도 外 목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됨.

[금융위원회 수정의견]

시행예정 법률	수정의견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① (생략)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u>대부중개업자는</u>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은</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다음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⁶⁾.

○ 한편 개정안은 안 제11조의2제8항(대부중개업자등의 개인정보 타인 제공 제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한 금융위원회 수정의견에 따라 위반행위의 태양을 안 제11조의2 신설 대신 법 제9조의9 개정을 통해 반영할 경우 벌칙 수준은 개정안의 법정형보다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⁷⁾이 됨.

○ 수정의견에 따른 벌칙 수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 수준에 비해서도 강화⁸⁾되는 것으로, 해당 법정형에 대하여는 대부중개

6)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7) 「대부업법」(2025. 7. 22. 시행예정)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8)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 2억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과정에서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여타 업권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8
